2026 재정세미나

선교현장에서 말하는 개정세법

혼란과 고민을 넘어 선교활동비, 거주자/비거주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아서

일 시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
장 소	충현교회 베다니홀
주 관	사단법인 토브협회
대 상	교단·교회·선교단체 재정 및 행정 책임자, 선교 담당 목회자, 선교사와 후원 관계자

사단법인 토브협회
TOV EXISTS TO CONNECT FUNDS WITH MISSION!

사단법인 토브협회
TOV EXISTS TO CONNECT FUNDS WITH MISSION!

▌Homepage | tov.or.kr

▌Facebook | www.facebook.com/tov.npo

▌E-mail | tov.npo@gmail.com

사단법인 토브협회를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2005년, 한국교회 구조 회복의 핵심인 교회재정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 교회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해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시작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Mission과 재정(Fund)가 만나 가치를 키워가는 교회와 세상, 그 연결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역량을 키우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고유한 사명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25년 7월 9일, 법인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의 근본적인 주인은 삼위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교회의 헌금과 재산을 보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인이신 삼위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도록 운영하고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 투명성, 효율성, 성장, 신뢰의 가치 위에서 한국교회가 신뢰의 첫걸음인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운영 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편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결산서 공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사단법인 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홈페이지 tov.or.kr **Email** tov.npo@gmail.com
연락처 02-6951-1391 **fax** 0505-231-2481
후원계좌 국민 | 006001-04-353709 | 사단법인 토브협회

순서

▮ 발제1

김태형 선교사 | 고신, 태국 선교사

선교현장을 말하다.

▮ 발제2

황병훈 국장 |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기획국장, 한성교회

선교단체 해외 선교 실무를 말하다.

▮ 발제3

최호윤 회계사 | 회계법인 더함 대표, 사)토브협회 이사장,
사)한국해외선교회(GMF)감사,
사)한국오엠(OMK)세무자문,
글로벌파트너스(GP)선교회 자문

선교현장을 담은 대안을 말하다.

▮ 질의응답

선교현장을 말하다.

2026년 개정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태국 선교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 김태형 선교사 (고신, 태국선교사)

가. 들어가는 글

저는 태국에서 미얀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선교하고 있는 김태형 선교사입니다. 현재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 현지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 개척과 현지 목회자 지원, 미얀마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정된 세법의 법률적 문제를 해석하거나,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2월27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등이 개정되면서 해외 선교비의 전달과 사용에 관한 문제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헌금은 본래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저 또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비의 성격을 구분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추며,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한 후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금융 환경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행정체계도 다릅니다. 선교비를 사용하는 방식 역시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내역을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선교헌금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고, 선교사는 이를 맡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선교비의 문제와, 최근 태국 아유타야 지역에서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한국교회의 선교 후원금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먼저 한국교회에서 해외 선교사에게 전달되는 후원금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들어오고 사용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의 재정에서 선교비를 편성하고, 이를 선교사나 선교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는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후원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단체를 통해 보내고, 어떤 교회는 선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개인 후원자들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특정 사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후원금은 선교사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지 교회의 운영비나 사역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지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와 교육 사역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특정 현지 교회나 사역자를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선교사는 그 재정을 받아 현지 교회나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선교사 개인을 위한 후원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후원금이 처음부터 생활비와 사역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 선교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일반적인 후원 방식입니다. 물론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모든 후원금의 출처와 목적을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와 후원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해외 선교사는 한국의 후원 교회와 선교단체뿐 아니라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송금으로 끝나는 일이현지에서는 여러 사람과 여러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 일상적인 선교비와 생활비의 구분, 그리고 증빙의 어려움

1. 선교사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가?

선교비를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문제는 생활비와 사역비의 구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생활비와 사역비를 구분하여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선교사의 개인 생활을 위한 것이고, 사역비는 선교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설명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현장에서 생활과 사역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교사의 일상은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사역지를 오가는 이동도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항상 미리 정해진 사역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던 돈에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국교회에서 보내는 후원금도 처음부터 생활비와 사역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내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에게 생활비와 사역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를 생활비로 보고 어디부터를 사역비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회계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실제 선교사의 일상에 적용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기존에 이러한 구분 없이 사용해 온 후원금을 사후에 다시 분류하고 증빙해야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2.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후원금과 복잡한 재정 흐름

두 번째는 후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에관한 문제입니다.

선교사에게는 여러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있고, 한국교회나 개인이 직접 보내는 후원금도 있습니다. 어떤 후원금은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전반을 위해 보내지만, 어떤 후원금은 특정 현지 교회나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재정이 다시 여러 곳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현지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선교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현지 목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그러나 송금 기록만 놓고 보면 선교사 개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후원금을 보낸 교회, 중간에서 전달한 선교단체, 현지에서 받은 선교사,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는 현지 목회자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재정 흐름을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와 후원자의 후원금이 서로 다른 경로로 들어오고, 다시 현지의 여러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선교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후원 구조와 현지의 집행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 현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제가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현지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미얀마 목회자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며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후원금을 보내면 제가 이를 현지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현지 목회자와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 송금했다면 송금 기록이 남을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수령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목회자가 받은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까지 증빙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목회자는 그 돈으로 가족의 식비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합니다. 그 모든 지출 내역을 한국교회의 기준에 맞추어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생활비를 지원받는 현지 목회자에게 매달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 역시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 목회자에게 후원금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목회자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현지 사역자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증빙해야 하는지,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4.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현장

선교현장의 지출 증빙 문제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금융과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도시에서는 은행 송금이나 전자결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상점이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요청해도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거나 간단한 수기 영수증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수증 자체가 없는 거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활동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긴급하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한국의 회계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록을 남기고, 가능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증빙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수증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선교현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5. 선교사의 사역과 재정관리 업무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선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지 교회의 예배와 목회, 성도들의 돌봄, 현지 목회자들과의 협력, 교회 운영과 여러 선교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후원 교회들과 선교단체에 보고하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후원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선교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회계와 행정 절차가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선교사는 본래의 사역보다 재정 집행과 증빙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더구나 모든 선교사가 회계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한 돈을 기록하고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그 지출이 한국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라. 아유타야 지역 교회 부지 매입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상적인 선교비사용에 관한 문제라면, 이제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경험한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국 아유타야 지역에 있는 한 현지 교회의 예배당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한국교회의 후원 결정과 부지 매입 준비

아유타야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 교회를위해 한국의 A교회가 교회 부지와 건물 매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원 예정 금액은 약1억 원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매입하려던 부지는 약580㎡의 토지와 기존 건물로, 매입가격은 165만 바트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남은 금액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교사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양육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건물을 확인했고, 토지 관련 서류와 건물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매입을 준비했습니다. 매도인 측의 기존 담보를 정리하는 문제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후원 의사도 있었고, 현지 교회에도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하지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결정된 선교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태국에 보내고, 누가 그 돈을 받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 태국에서는 한국교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태국의 토지 소유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한국의 선교단체가 현지 교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듯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현지의 법률에 맞는 소유와 사용 구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태국인 성도들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유권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실제 교회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교회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현지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선교헌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누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보내는데,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한국교회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선교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3. 한국에서 후원금을 전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에서 선교사인 저에게 사업비를 보내고, 제가 태국에서 환전하여 현지 부지 매입과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부지를 확인하고 매도인과 협의하며, 매입 이후 건물을 수리하는 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러한방식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개인 계좌로 거액의 후원금을 송금할 경우 그 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나 증여가 아니라 특정한 선교사업의 집행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와 집행위탁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비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선교사 개인이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는 구조를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모든세무적 문제가 해소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내 선교단체나 다른 기관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 여러 선교단체를 통한 집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있는 위O선교회를 통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당 선교단체에 헌금을 보내고, 선교단체가 선교사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여 현지에서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선교단체의 정관과 운영 규정상 선교사 개인에게 이처럼 큰 금액의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절차와 정관 변경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 단체의 정관과 사업비 집행 규정 때문에 다시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후 다른 경로도 검토했습니다. 저를 후원하고 있는 오O선교회나 파O선교회등 여러 기관을 통한 후원금 전달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기관에 헌금을 보내야 하는지, 그 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지, 현지에서 집행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고, 재정 집행에 관한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회

에서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결정했는데, 그 헌금을 보내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각각의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수리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5. 후원 교회에서도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A교회 당회에서는 후원금 집행에 관한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행책임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저는 현지 선교사로서 그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후원 교회에서 재정 집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하나의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직접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금을 직접 받는 기관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받을 기관은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직접 후원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관련 증빙을 발행하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이 추가되면서 그동안 검토해 온 방안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후원금의 법적·회계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고, 저 역시 그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다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선교헌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목적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선교단체들 역시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려고 할수록, 실제 선교비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6. 결국 새로운 집행 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국내대형NGO인 기OOO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후원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기부하고, 그 기관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며, 현지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선교사 개인이 직접 후원금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 행정적인 자금 수령과 집행의 주체에서는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검토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집행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 계약과 대금 지급, 건물 수리와 정산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한 기관이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현지 교회의 필요를 보고1억원의 선교헌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는 매입하려는 부지와 건물이 있었고, 사업의 목적과 계획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선교단체를 알아보고, 집행위탁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관련 세무 문제를 검토하고, 후원 교회와 다시 협의하며, 결국 새로운 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현지에서는 부지 매입과 교회 공간 마련을 위한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 교회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한국교회와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보내고, 누가 받아야 하며, 어떤 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해외 선교비 집행의 현실입니다.

마.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다른 규모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선교사가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와 사역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비교적 큰 규모의 후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구조와 해외에서 그 돈을 사용하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을 관리하지만, 현지에서는 선교사가 여러 교회와 사역자들을 연결하며 실제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와 사역비가 중첩되기도 하고,후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둘째, 한국에서 요구하는 재정관리와 증빙의 방식이 해외 선교현장에서는 그대로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거래 방식이나 금융 환경이 다르고,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 형편과 행정적인 여건도 다릅니다. 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현지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타야 교회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한국에서는 후원금의 집행 주체와 자산의 귀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태국에서는 외국인과 외국 기관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세법만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태국의 법률만 따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넷째,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선교비의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말씀드린 어려움들이 모두2026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선교사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중첩되는 현실, 현금 거래와 증빙의 어려움, 태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해외선교비의 전달과 집행에 관한 법적·세무적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기존의 선교 방식이 과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교사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라도 실제로는 현지 교회를 위한 사업비일 수 있고, 한국교회에서 후원한 재정이라도 현지 법률 때문에 한국교회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재정을 일정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증빙하도록 요구한다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활동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 헌금을 보내고 싶어 하고, 현지 선교사가 그 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글

저는 오늘 한국의 세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보낸 헌금을 선교현장에서 책임 있게 사용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교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교사 역시 재정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외 선교현장은 한국과 환경이 다릅니다. 금융과 회계의 수준이 다르고,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며, 선교사가 사역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아유타야 교회부지 매입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을 준비했고, 현지 교회는 예배당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책임 있게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누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통해야 하는지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몇 달씩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그 현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선교헌금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해외 선교사들이 그 헌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며 책임 있게 보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단체의 해외 선교 실무를 말하다.

- 황병훈 국장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기획국장, 한성교회)

들어가는 말

저는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 국제 사역을 맡고 있는 황병훈입니다. 한국성서유니온은 목적과 비전을 함께하는 전 세계 123개 성서유니온의 가족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산하에서 성서유니온 출판사라는 수익 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통해서는 「매일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출판하고, 현장에서는 캠프, 세미나, 묵상 훈련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단체이기에 해외 사역보다 국내 사역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성서유니온에는 자립 단체는 반드시 미자립 단체를 도와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를 따라 한국성서유니온은 아시아 지역의 미자립 성서유니온을 돕는 방식으로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성서유니온의 해외 사역 실무자로서 개정 세법에 비추어 우리의 선교비 운영 방식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성서유니온의 선교비 운영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는 산하 수익 기관인 출판사의 순수입 80%와 모금을 통해 사역비를 마련합니다. 사역비는 국내 사역에 약 80%, 해외 사역에 약 20%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역비는 매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간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후 추경을 통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성서유니온의 해외 사역비 주요 지출 내역은 국제 SU 분담금, 파트너 SU 지원, 직접 사역, 협력 선교사 지원입니다. 모두 담당자의 기안서 제출, 국장과 대표의 결재, 출납 담당자의 송금 및 회계 처리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제 SU 분담금

성서유니온은 전 세계에 123개 나라에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 성서유니온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NGO, 기업, 심지어 지하 단체로 존재합니다. 국제 본부도 영국 정부에 등록된 독립 법인입니다. 각 나라 성서유니온을 직접 지휘하는 중앙 행정부가 아니라, 각 나라의 사역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국제 협력 기구입니다.

각 나라 성서유니온은 매년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미화 100달러에서 많게는 50,000달러까지 국제 분담금을 부담해 국제 본부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 사역 담당자가 국제 본부에서 청구서(Invoice)를 받아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집행합니다. 국제 본부는 입금이 확인되면, 법인 명의의 영수증을 보내 줍니다. 그리고 이 수입으로 진행한 사역(미자립 성서유니온 지원, 지역별 국제 SU 컨퍼런스 개최 등) 보고서를 정확한 수입, 지출 내역과 함께 매해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2) 파트너 SU 지원

한국성서유니온은 동서아시아 그룹의 회원입니다. 동서아시아 지역에는 28개의 성서유니온이 있고, 이 중 11개만이 자립 단체입니다. 자립 단체는 미자립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역을 지원하는데, 한국성서유니온은 몽골,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성서유니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특별 모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담당자가 세 나라의 SU와 함께 사역 프로젝

트를 기획하고, 이를 한국에서 홍보해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된 비용은 전액 각 단체로 송금합니다.

문제는 세 단체 모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독교 단체 등록에 소극적이어서 성서유니온이 비공식 단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 단체 모두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고, 대표나 이사장의 개인 계좌를 사역 계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단체 이름과 담당자 서명이 들어간 간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합니다.

3) 직접 사역

직접 사역은 우리 사역자가 파트너 SU 국가로 가서 묵상 훈련 세미나 또는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사역자는 가능한 모든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카드 결제가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약 1,500불 정도의 현금을 사역비로 준비하고, 현금 지출이 발생하면 현지 성서유니온을 통해 지불합니다. 그리고 현지 성서유니온이 발행한 간이 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합니다.

4) 협력 선교사 지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서유니온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비전에 함께할 수 있는 선교사들과는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매월 선교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매월 지원하는 선교비는 선교사의 개인 계좌인지 선교단체 계좌인지 구분하지 않고, 선교사가 원하는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우리 측의 지출 증빙은 계좌에 남은 이체 기록으로 합니다.

프로젝트 지원은 선교사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사역 타당성이 확인되면 함께 논의해서 프로젝트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 내에서 지원 규모를 확정해서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선교사에게 별도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정기 지원비처럼 우리 계좌에 남은 이체 기록으로 처리합니다.

2. 개정 세법 발효 이후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과 노력

개정 세법이 발효된 뒤 한국성서유니온 국제사역 실무자는 관련 세미나에 두 차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한 핵심은 사역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칙에 동의하고, 실제 사역과 지출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해외 송금 및 지출을 증빙할 수는 있지만, 직접 사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국내 기준에 맞게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제 SU 분담금의 경우

국제 분담금의 경우 국제 본부에서 인보이스를 받고, 내부 결재 후 송금하며, 법인 명의 영수증과 연간 수입·지출 보고를 받는 구조이기에 다른 유형보다는 지급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본부는 해외 독립 법인으로, 본부가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본부는 100%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보낸 분담금도 본부에는 모금 수입 중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분담금의 근거, 수취인, 지급 사실, 국제 본부의 보고 자료뿐입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개정 세법의 요구를 충족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국제 본부와 분담금을 10%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 파트너 SU 지원금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지원하는 파트너 SU 지원금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송금증과 간이 영수증을 받지만, 개인 계좌이고 개인의 싸인으로 증명된 영수증이기에 수취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여주지, 보낸 돈이 프로젝트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자는 모금 단계부터 프로젝트별 코드를 부여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 한국 측 승인 내용, 수취인의 계좌 명의 확인, 송금 내역, 수령 확인, 현지 지출 내역과 결과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도 날짜, 금액, 품목, 사용 목적, 수취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지급 목적과 사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세무상 어떤 처리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파트너 SU 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접 사역의 경우

직접 사역의 경우, 사역 기획서와 리더십의 결재가 증거로 남고, 대부분의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고 받은 간이 영수증도 과거에는 전체 비용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받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각각의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남은 현금과 환전 내역, 영수증으로 정산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통해 현지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참석 인원 등 사역의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사역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지로 파송된 사역자가 현지 사역자에게 계속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고 민망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실무자의 고충입니다.

4) 협력 선교사 지원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 후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선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선교사가 생활비로 써도 되고 사역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개정 세법이 발표된 후 담당자는 선교사들에게 사용처를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약정을 맺고(약정서 있음), 매해 약정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 프로젝트 지원은 선교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성서유니온이 사역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간 예산 안에서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제안서와 송금 기록만 지출 증빙으로 남기고 별도의 영수증이나 사용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선교사에게 승인된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실행됐는지, 지원금이 어떤 항목에 사용됐는지, 잔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온 선교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망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하던 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선교단체로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

한국성서유니온은 개정 세법 관련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해외 사역비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제 분담금, 파트너 SU 지원, 직접 사역비, 협력 선교사 지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만, 각각을 회계와 세무상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설명할 공통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발행한 간이 영수증이나 현지 담당자의 확인서, 송금 내역, 사업 결과 보고를 함께 보관하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마다 행정 여건이 다른데, 모든 곳에 같은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현지 언어로 된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번역해야 하는지, 민감한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직접 사역의 경우 우리 사역자가 현지에 가서 사역해야만 직접 사역인지, 아니면 협력 선교사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우리의 목적과 비전에 일치함을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한 사역도 직접 사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어떤 부분은 세무 해석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나가는 말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성서유니온의 경험과 질문을 나눈 것이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성서

유니온도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책임 있게 사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배우고 개선하겠습니다.

발제의 기회를 주신 토브와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을 담은 대안을 말하다.

-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대표
사)토브협회 이사장
사) 한국해외선교회(GMF) 감사
사) 한국오엠(OMK) 세무자문
글로벌파트너스(GP)선교회 자문)

가. 들어가는글

비영리 현장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현장을 담은 법제도 또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올해 초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물밑에 있었던,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선교단체의 구조는 참 독특합니다. 선교 현장은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결과를 향해 달려가려면 달리면서 넘어야 하는 허들을 파악하고 적시에 뛰어올라야 합니다.
세법 적용에 있어 선교사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가변적인 과세 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헤쳐가야 할 선교현장에 닥친 환경변화를 향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 거주자와비거주자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비거주자(국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1].

---

1)]소득세법 제3조

1. 선교사와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1) 국내에 주소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4]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봄(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2007.10.25.)

2) 민법 제18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5]

2) 183일 이상의 거소 기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6]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7]

3) 소결

1년 이상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선교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파송 선교단체 또는 교단 선교부와의 관계에 따라 해외 선교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2.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 · 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9) 국내원천 연금소득
10)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12)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3)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수령하는 금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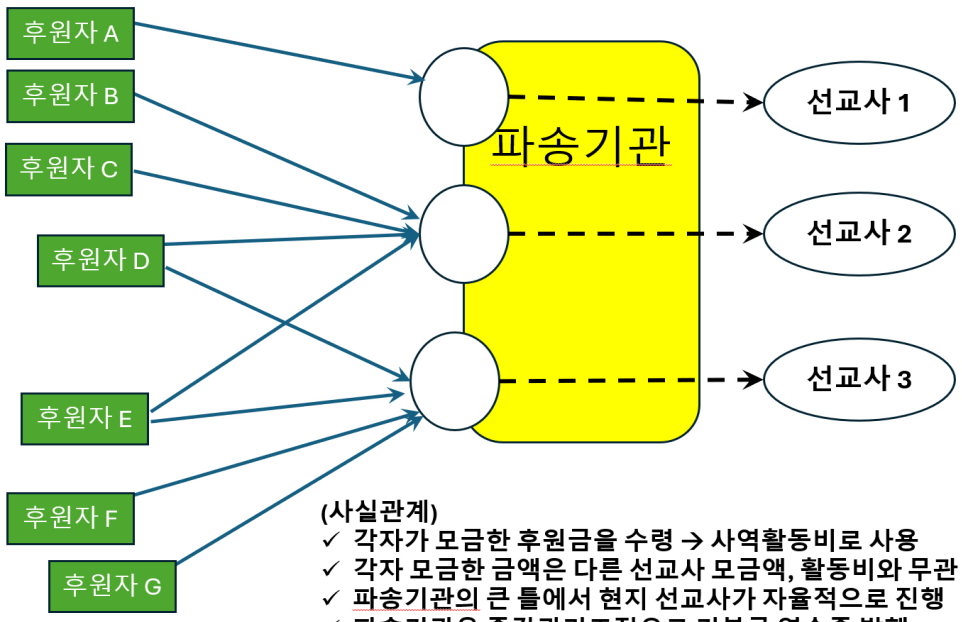
3. 소결

선교사가 선교 활동과 연관하여 수령하는 금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수령하는 금전에 대해 과세되므로, 특정한 조직(파송단체, 교단 선교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선교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송단체 또는 교단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의 경우 해당 기관과의 관계 성격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파송기관과의 관계

파송기관과 선교사와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교사는 파송기관에 속한 피고용인, 근로자인지?

민법은 당사자 일방(피고용인)이 상대방(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관계를 근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피고용인, 근로자라면

- 선교사의 모금액과 무관하게 파송기관이 선교사 생활비와 활동비 규모를 정하는지?
- 많이 모금한 선교사와 적게 모금한 선교사간의 활동비 형평성이 있는지?
- 파송기관은 고용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

위3가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현재의 관계 상황은 아닙니다.

2) 선교사는 자율성을 가진 독립 사역자인지?

선교사가 자율성을 가진 독립 사역자이지만 소속 선교기관의 정체성을 따르고, 소속 선교기관의 멤버 케어를 받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파송 기관 소속 직원 성격이 아니라 파송 기관과 affiliation 관계를 유지하는 독립적 사역자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8)]

3) 소결

현지 선교사는 파송기관과 선교의 방향을 공유하며, 그 취지에 맞는 사역을 현지에서 수행하고, 파송기관은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며, 양측은 공동의 선교 목적을 위해 동역합니다.
단순히 소속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관계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8)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영문「세계선교사 관리규정」제3조에서 선교사가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is affiliated with'를 사용합니다.
Article 3 (Definition of Missionary) A missionary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completed all missionary training programs required by the KMC Headquarters Mission Bureau, passed the missionary qualification review, is affiliated witha church or mission organization belonging to the KMC, receives mission activity expenses or living expenses, and has been sent to carry out domestic or international missionary work among local peoples, overseas Koreans (diaspora), or domestic immigrants.
https://kmc.or.kr/en/hq-system/seongyogug/%EC%84%B8%EA%B3%84%EC%84%A0%EA%B5%90%EC%82%AC%EC%97%AD%EB%B6%80?utm_source=chatgpt.com

라. 수령하는선교비의 성격

1. 독립된 선교사로 판단하는 경우

파송 기관이 선교사에게 현지사역을 요청하는 멤버로 파송하고, 선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수락하고 현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선교사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현지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를 송금하는 경우 해외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선교비를 지출하는 파송 기관은 파송 기관의 방향성으로 해외 선교사업을 대행하도록 선교사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사업비이므로 해당비용은 파송 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으로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수령하는 선교비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세법이 정한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속 직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선교사와의 관계를 소속직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선교사는 국내 소속기관의 직원에 해당되어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령한 금전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1) 생활비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선교사가 생활비 내역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활동비

선교사가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하여 수령하는 성격의 활동비는 소속기관의 사업비 성격이므로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교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할 증빙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소속 파송기관의 의결기구가 승인한 규약(예: 선교활동비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선교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은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증빙의 적격성 요건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지출의 성격을 파악할수 있고,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증빙이면 모두 가능하고,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이유를 별도로 기술한 문서를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비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선교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며, 파송기관의 내부 허입 기준과 규정에 따라 선정된 선교사로 현재 활동하는 선교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용도: 선교활동비의 용도는 선교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들이어야 하며, 선교사 개인차원의 생활비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지 전도, 심방, 교육, 현지인 접촉과 만남에 필요한 교재비, 식사비, 선물비, 장소사용료 등)
- 지급주기
- 지급액: 현지 물가를 고려한 지역별 구분금액 등을 정해야 하며, 현지 사정과 물가 등을 고려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cover하는 정도의 금액 한도(지급액은 선교활동비 지급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 경우도 무방함)

마. <u>프로젝트사역비</u>

일상적인 활동비 규모를 넘어 고액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1. 활동 프로젝트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비는 활동하면서 소진하는 성격이므로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사업비 성격으로 인정되며, 과세관계와는 무관합니다.

2.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교회를 건축해서 기증하려는 경우는 자산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성격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상 사업비를 집행하는 주체가 종교법인이든 일반 공익법인이든 차이가 없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바. 국제조직의본부에 지급하는 분담금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비전을 달성하려는 국제기구의경우 본부에서는 여러나라에 분포한 지부들이 공통의 정체성과 사업수행,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SW사용 가이드 등 여러 지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용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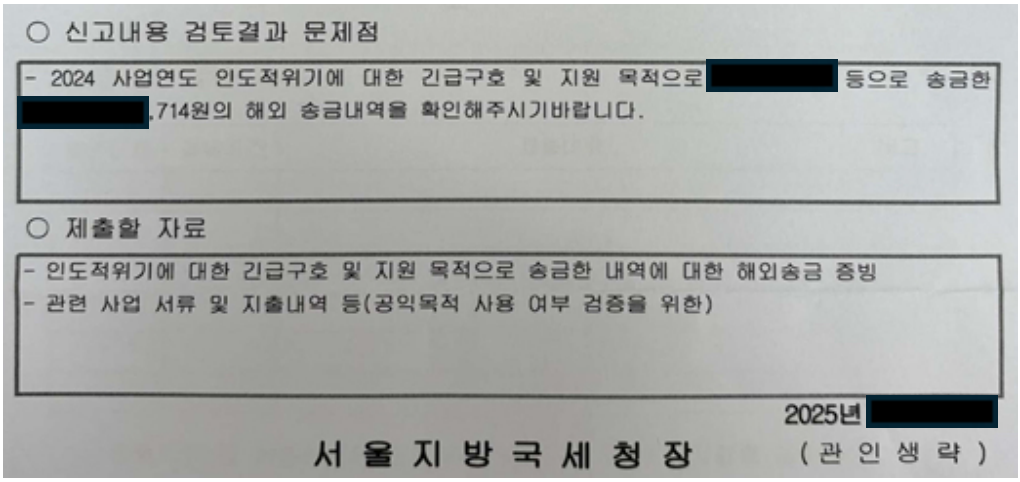
여러 조직의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참여한 지부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성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관계는 없습니다.

2. 용역 대가

본부가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는 대가 성격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 지급이므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3. 기부

아래 자료는 International NGO가 해외 지부에 사업비를 송금한 경우 해당 송금액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보정 요구한 국세청 공문자료입니다.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 2024 사업연도 인도적위기에 대한 긴급구호 및 지원 목적으로 [redacted] 등으로 송금한 [redacted].714원의 해외 송금내역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출할 자료

- 인도적위기에 대한 긴급구호 및 지원 목적으로 송금한 내역에 대한 해외송금 증빙
- 관련 사업 서류 및 지출내역 등(공익목적 사용 여부 검증을 위한)

2025년 [redacted]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 (관 인 생 략)

(참고: 긴급구호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령자가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소재하는 지부가 해외 본부가 진행한 사업비 또는 자금이 부족한 또 다른 국가의 지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후원하는 경우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하는 성격(타법인 출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NGO와는 달리 한국 세법은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의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는 세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 해외파트너 지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파트너를 지원하는 사업을포 함한다면 지원할 수는 있지만 a)종교법인의 목적사업에 해외 파트너를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지 여부, b)지원금을 수령하는 해외 파트너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국내에서 지원한 주체가 증여세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지원한 것으로 종료하는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사용한 결과까지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 협력선교사 지원

공익법인이 다른 주체를 지원하는 경우는 상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점에서 협력 선교사(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지원한 후 지원한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법인 출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나가는글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무거운 마음을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려는데 이 땅의 법률체계가 왜 이리 많은 장애물이 되는지? 라는 안타까움의 호소 앞에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비영리와 관련된 세제 구조는 복잡합니다.
다만, 그동안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기에 넘어간 부분이 많았으며, 아직도 논의하고 정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맡겨진 연보에 대하여 주 앞에서 뿐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고후8:20~21)
우리의 해외선교는 해외에 있는 이방을 하나님나라로 초대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초대의 대상은 해외 선교지의 현지인 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일반 사회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롭게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토브협회
TOV EXISTS TO CONNECT FUNDS WITH MISSION!